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9. 7. 24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7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7월 9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년 7월 16일 제65회(임시회)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추진감)

- 가. 제정이유
 - 도로법 개정으로 특별시와 자치구간 관리대상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- 타 공사나 타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를 요하게 한 때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(안 제3조제1항)
 -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함. 다만,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위종료후 징수 가능(안 제3조제4항)
 - 허가된 도로굴착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굴착하게 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환부 또는 추정 기능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유제한)

본 조례(안)은 도로법 제64조 및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와 구도가 분리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손해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법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지난 회기에 제정함으로써 기금조성을 하는 데 따라 제정하게 되는 것으로, 본 조례 제정은 본문 제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, 굴착복구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따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난 회기에 처리한 굴착복구기금조성조례에 내용을 포함한 제정이 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맞는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(안)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7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사유

- 도로법 개정('95. 12. 6 법률 제5025호)으로 특별시와 자치구간 관리대상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타 공사나 타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를 요하게 한 때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(안 제3조제1항)
-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함. 다만,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위 종료후 징수 가능(안 제3조제4항)
- 허가된 도로굴착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굴착하게 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환부 또는 추징 가능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도로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
- 나. 예산사항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합 의 : 필요 없음.
- 라. 기 타 : 조례(안) 별첨
- 마. 입법예고 : '99. 5. 31 ~ '99. 6. 19(20일간) - 특기사항 없음.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(안) 1부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로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원인자부담금”이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도로복구공사”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해부분 및 간접손해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
2. “직접손해부분”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
3. “간접손해부분”이라 함은 직접손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

제3조(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)

- 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.
-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해부분 및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. 다만,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,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, 직접손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,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,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.
-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물 등이 불통, 파열, 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.

제4조(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정)

-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.
 - 1.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2.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해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. 다만,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.
 - 3.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-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·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〈별표1〉

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매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

1. 표준최적구매 - 1:0.1(기존 도로는 완전 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)
2. 최소굴착면적, 최소굴착폭, 간접손괴영향구간 및 복구비용

구 분	차 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)	보 도	
		블록 및 타일류	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최 소 굴 착 면 적	0.7m × 0.7m	0.8m × 0.8m	0.7m × 0.7m
최 소 굴 착 폭	0.7m	0.8m	0.7m
간접손괴 영향구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-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25m 구간 ○굴착깊이가 2.5m 미만 -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3m 구간 (굴착시 컷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.6m까지의 범위) ○굴착깊이가 2.5m 이상 -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가 1/5까지 범위(굴착시 파일,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컷타기 미사용시는 0.3m씩 추가 가산) ○사리도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- 아스팔트 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3m 구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6m 구간 ○보차도경계 인접 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.25㎡(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× 1m로 계산한다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. ○단,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·차도 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.

구 분	차 도 (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도로)	보 도	
		블록 및 타일류	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, 콘크리트류
직 접	직접손깨부분 복구비	직접손깨부분 복구비	직접손깨부분 복구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아스팔트 포장도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손깨 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깨 영향구간의 덧씌우기(두께 5cm)비용 ○콘크리트 포장도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손깨 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깨 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(5cm) 비용 -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(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) -손깨 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표층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깨 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(5cm)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블록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굴착구간 및 손깨 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(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%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.) ○타일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손깨 영향구간의 콘크리트 기초 시공비 -굴착구간 및 손깨 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손깨 영향구간의 시공비 ○굴착구간 및 손깨 영향구간의 덧씌우기(4cm)비용
복 구 비 용	간 접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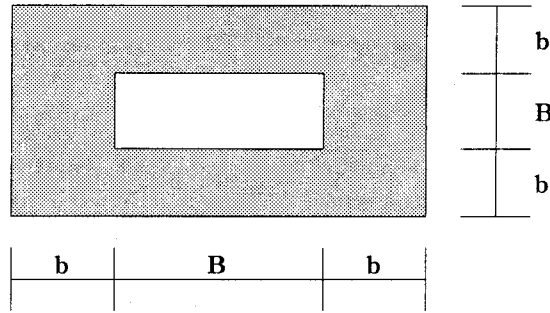
비고 : ①보도의 굴착은 굴착잔여 총 폭이 1m 미만일 경우에는 직접 손깨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 복구비용으로 징수하고, 간접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②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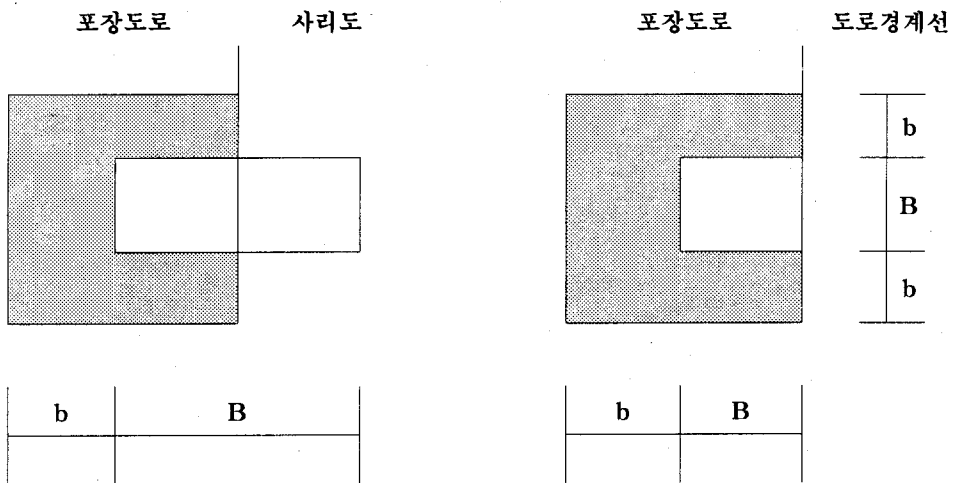
3. 굴착폭(B), 간접 손케영향구간(b) 및 간접 복구단면

가. 굴착폭 및 간접 손케영향

1) 표준 단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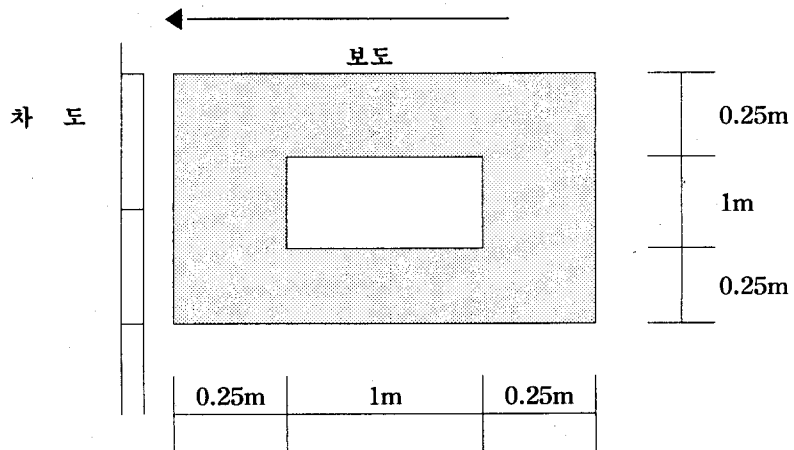


2) 사리도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평면도(아스팔트,콘크리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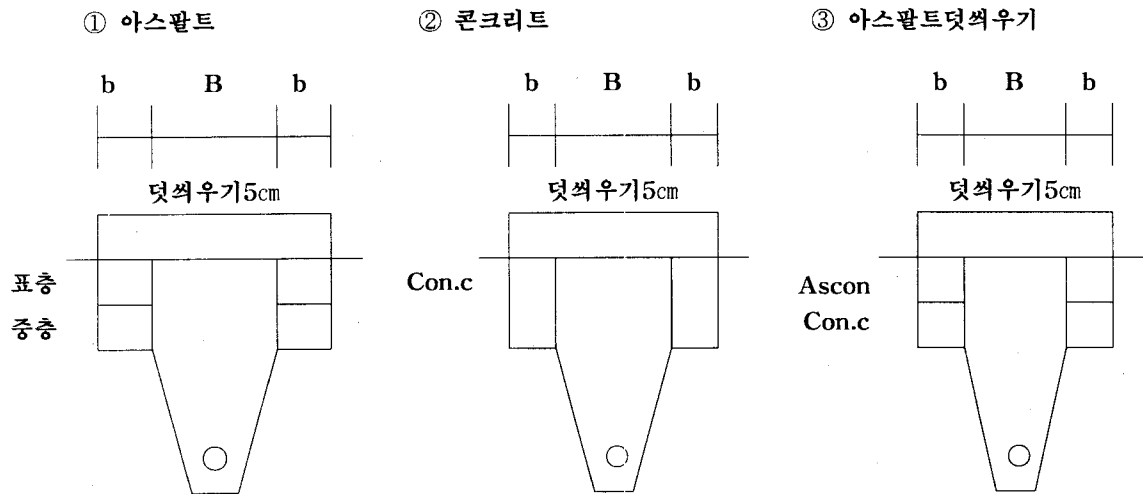
3)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평면도(보도구간)

보차도경계블록(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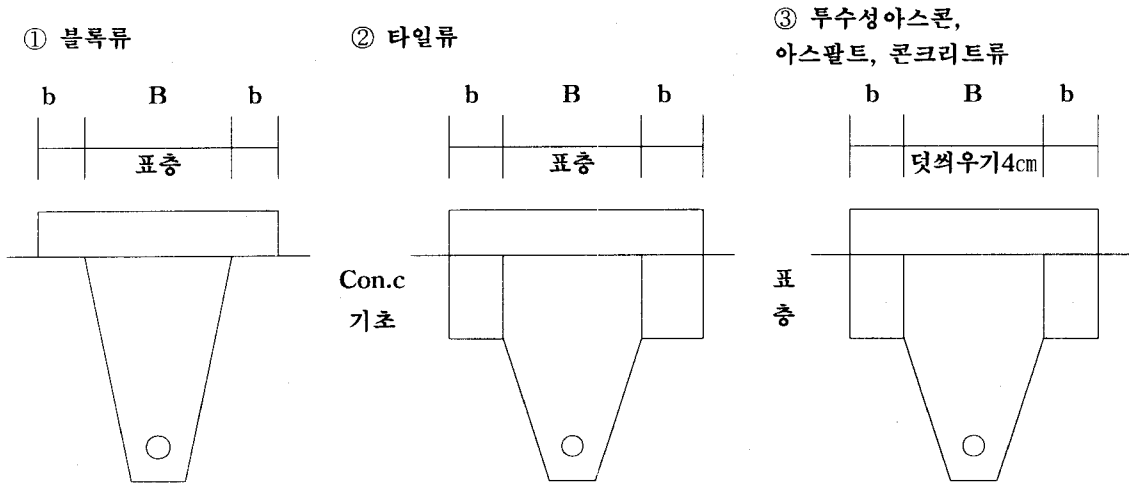


나. 간접 복구단면

1)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



2) 보 도



4. 보·차도 경계블록(석), 도로경계블록(석), 측구,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직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,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.

〈별표2〉

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

종 별	부 호	적 용 단 면	적 용 범 위	
아스팔트 포장도로	A-1	표 층 : 5cm 중 층 : 15cm 기 층 : 20cm 보조기층 : 40cm	폭 20m 이상 도로	
	A-2	표 층 : 5cm 중 층 : 7.5cm 기 층 : 20cm 보조기층 : 30cm	폭 20m 미만 도로	
콘크리트 포장도로	C-1	표 층 : 20cm 보조기층 : 20cm	폭 6m 이상 도로	
	C-2	표 층 : 15cm 보조기층 : 15cm	폭 6m 미만 도로	
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	CA-1	표층(아스콘) 5cm 표층(콘크리트) 20cm 보조기층 : 20cm	폭 6m 이상 도로	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
	CA-2	표층(아스콘) 5cm 표층(콘크리트) 15cm 보조기층 : 15cm	폭 6m 미만 도로	
보 도	일반보도 블 록	일반보도블록표층 : 6cm 모 래 : 3cm 보 조 기 층 : 10cm	단,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.	
	소형고압 블 록	일반보도블록표층 : 7cm 모 래 : 3cm 보 조 기 층 : 10cm		
	오나멘트 타 일	오나멘트타일표층 : 4.5cm 물 (1:3) : 3cm 콘크리트 기초 : 5cm 보 조 기 층 : 10cm		
	투수성 아스콘	투수성아스콘표층 : 4cm 기 층 : 10cm 모 래 : 5cm		
	기타	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		
사 리 도		영등포구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		
기타도로시설물	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			

비고 : ①도로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, 전체표층용 블록량의 30%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②기층,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.

〈별표3〉

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

1.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 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컷다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,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.
4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.
5. 도심지 내의 도로,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6.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,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,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7.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, 도로포장설계·시공지침(건설교통부) 및 도로굴착·복구업무처리규칙(영등포구)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.

'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9. 7. 24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5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5월 14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1999년 5월 19일 제64회(임사회)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보류
1999년 7월 16일 제65회(임사회)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건설교통국장 추진갑)

- 가. 제안이유
 - 우리구의 절대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를 매입 주차장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'99영등포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
- 나. 주요골자
 - 우리구 주차장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절대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동별 소규모주차장을 매입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